

# 기획특집

## 연대와 화합으로 가는길

- 북한이탈여성 직장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장애인 직업훈련 경험 및 그 효과성의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  
이택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수준 진단과 정책적 수요  
-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아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탈여성 직장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sup>1)</sup>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I. 서론

2013년 9월 현재, 전체 북한이탈 입국자는 25,649명이며 이 중 여성은 17,820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누적인원으로 볼 때, 남한 정착 후 거주기간이 5년 이하 여성 입국자는 58.8%, 5년 이후 여성 입국자는 41.2%를 점하고 있다<sup>2)</sup>.

한편, 북한이탈 입국자의 2012년도 경제활동참여율은 52.2%, 고용률 48.3%, 실업률 3.9%(북한이탈 주민실태조사, 2012)인데 반해, 2012년 남한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61.5%, 고용률 59.7%, 실업률 3.0%(통계청 KOSIS, 2013)로 북한이탈 입국자가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계비 수급률이 2007년 57.1%에서 2012년 현재 27.9%로 감소하고 있다(국민전체 수급율 3.2%~2.9%에 비해서는 특수성 인정한다 해도 많은 변화 필요).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계비 수급률(김선화, 2013) 총 5,878명 중 2,431명(41.4%), 의료급여는 3,305명(56.2%)이다.

입국이후 5년간은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제도, 취업장려금, 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제도의 혜택기간이지만 이후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입국후 남한정착기간 5년을 전후하여 적응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적응의 실태, 그 중에서 직장적응 실태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1)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진: 김원홍, 김인순, 황의정, 박정란, 전선영)이 2013년도에 기본과제로 수행한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요약 정리 및 보완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2) <표> 북한이탈주민 현황

	2008년도 이전 입국	2009년 이후 입국	전체
남자	5,117(65.4%)	2,712(34.6)	7,829(100.0)
여자	9,952(55.8%)	7,868(44.2)	17,820(100.0)
전체	15,069(58.8)	10,580(41.2)	25,649(100.0)

제안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장적응’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적응’은 자본주의체제의 이해 및 독립적이고 적정 수준의 경제생활의 영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직장적응은 직장 진입(취업)과 직장유지(직장적응)의 두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실태 및 직장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수준, 연령 등 필요한 변수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 1. 남한입국 5년 전후로 취업양상에 변화가 있는가?

- 취업여부, 직업, 종사상지위, 직장규모,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각종 정부지원 수당 및 장려금 활용률에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초기에 비해 현재 좋아졌는가?

문제 3.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일자리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이 큰가? 5년 전후로 차이가 있나?

문제 4. 직장적응과 직장만족도에 5년 전후로 차이가 있는가?

문제 5. 직장적응을 직장진입과 직장유지로 설정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문제 6. 차별은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 등

## II. 입국후 5년 전후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적응 실태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여성들을 남한입국이후 1년 이상자, 취업경험이 있는 자, 남한입국 이후 5년 이상자가 50%가 되도록 표집하였다.

- 취업자 58.2%, 비취업자 41.8%로 취업자의 비율이 약간 높음
- 연령은 40대 39.4%, 30대 33.5%로 30, 40대 72.9%, 20대와 5.60대가 각각 13.2%, 13.9%, 5년 전후로 유사한 구성
-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졸업 72.2%, 전문대 17.0%, 소학교 6.5%, 대졸이상 4.3%
- 제3국 체류한 경우가 80.0%, 제3국 체류기간도 5년 이상이 48.6%
- 가구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83.3%, 300만원 미만은 4.3%, 300만 원 이상은 2.3%로 열악
- 혼인상태는 미혼 34.5%, 동거 10.5%, 기혼 55.0%이고, 현재 동거자녀 있는 경우가 51.0%, 없는 경우가 49.0%, 자녀의 연령은 5세 이하 37.3%, 6세 이상은 71.6%임.
- ‘제3국이나 북한에 송금한다’가 74.2%로, 낮은 가구소득수준에 송금부담도 안고 있었음.

### 2. 조사결과

연구문제 1. 남한입국 5년 전후로 취업양상에 변화가 있는가?

- 1) 취업률, 상용직비율, 정규직비율, 직종, 월평균 소득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대보험 가입

- 비율은 5년 이후가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5년을 전후하여 정부지원 각종 수당이나 장려금 수혜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 활용률이 최소 24.5% ~ 최대 40.8%로 50% 미만이며, 취업장려금 활용률이 37.8%에 그쳤다.
  - 3) 직장생활 실태 관련, 남한 입국이후에 총 직장경력은 3년 미만 80.6%, 3년 이상은 19.4%에 불과하며,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은 20대(3.8%), 30대(7.5%), 40대(15.8%), 5-60대(22.9%)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길었다.
    - 직업선택기준은 '월급수준'(61.8%)이 가장 많았고, '자신의 기술/능력/자격증 활용'(12.2%), '근무시간'(8.8%), '체력'(5.7%)순이고, 5년 이후와 차이점은 '자신이 가진 기술, 능력, 자격증 활용' 비율이 높다는 점과 '체력(건강수준)의 비율이 높다는 점. 취업/ 비취업자 간에는 '체력' 순위가 높다는 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4) 직장생활을 오래 유지하게 해준 동인은, '월급수준(52.8%)', '근무시간(9.4%)', '내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자격증 활용(7.9%)' '체력(6.4%)'의 순으로, 취업자는 근무시간이 2위이고 비취업자는 체력이 2위로 '체력'이 직장유지의 동인임을 보여주었음.

연구문제2.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는 입국초기에 비해 현재 좋아졌는가?

- 1) 건강상태는 입국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여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청되는 영역이다.
  -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결

과, 전체적으로 (초기)신체적 건강심리상태(3.022) > (초기)심리적 건강상태(3.043) > (현재)신체적 건강상태(3.076) > (현재)심리적 건강상태(3.126)의 순으로 신체적 건강이나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나아지고는 있으나, 입국당시의 수준에서 별 진전이 없다. 그러나 5년 이하보다 5년 이후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여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 연령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상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 건강상태는 차이가 있었는데, (초기)심리적 건강상태와 (현재)심리적 건강상태 모두에서 20대와 나머지 연령대 간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입국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으므로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심리치유방안이 요청된다.
  - 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 졸업의 건강수치가 나머지 3개 학력(소학교졸업, 전문대졸, 대졸이상)보다 현저하게 낮아 고등중학교졸업자의 건강상태가 힘들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30대 이상, 고등중학교졸업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 도입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 2) 경제적 형편이 '입국직후와 변함이 없는 편' 18.1%, '입국직후 보다 좋아진 편' 73.6%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취업장려금 수급기간이 6개월~1년 이하와 3년 이상 간에는 3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이 4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문제 3.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직장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은, 가족영역, 개인영역, 일자리영역의 3개 영역을 4점 척도로 측정하

결과, 가족(평균 2.2772), 개인(평균 2.2389), 일 자리((평균 2.4190) 등은 2.5점 이하로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지적할만한 사항으로 취업자, 비취업자 모두 2.5점을 넘는 문제는 ‘언어, 역량 문제’ 등이다. 5년 전후로는 가족영역문제가 5년 이후 쪽이 더 어렵다고 하여 자녀양육보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세부항목별로는, 취업자는 5년 이하와 이후 간에 18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일자리영역의 ‘낮은 임금문제’만이 5년 이하(평균 2.550)가 5년 이후(평균 2.379)보다 힘들다고 한 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793. p=0.074). 비취업자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연구문제4. 직장적응과 직장만족도에 5년 전후로 차이가 있는가?**

- 1) 소득수준, 직장안정성, 직장근무환경, 한 회사에 다니는 근속기간, 업무에 대한 자신감, 인간관계 /의사소통 능력,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의 7문항을 4점 만점으로 하여, 직장생활 초기에 비해 현재에 나아진 정도에 알아본 결과, 7개 항목 모두 3점 이상으로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
-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쪽의 평균점수분포는

3.66~3.85로 4점에 육박하며 비취업자의 점수 분포는 3.31~3.45로 3.5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취업여부별로 7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5년 전후 비교에서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7개 항목 모두에서 초기보다 현재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였다.
- 2) 직장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수,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직무훈련, 근무.작업환경, 보상 공정성, 개인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직장상사와 직장동료), 복지후생제도의 9개 영역 10항목으로 알아보았다. ‘전반적 직장만족도’는 4점 척도 결과, 평균 2.740으로 ‘약간 불만족’과 ‘약간 만족의 중간’정도이고, 세부항목으로 ‘임금(평균 2.565)’과 ‘보상공정성(평균 2.594)’이 가장 낮고 ‘직장상사와의 의사소통(평균 2.897)’, ‘직장 동료간의 의사소통(평균 2.899)’이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 쪽의 만족도가 비취업 쪽보다 유의하게 높아 차이가 있었다. 10개 세부만족도를 합하여 만든 ‘전체 직장만족도’ 변수의 신뢰도는  $\alpha = .917$ 로 상당히 양호했으며, 취업 쪽의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2.78으로 비취업쪽 평균 2.6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표 1〉 취업상태별 직장만족도

(단위 : 명, %)

	취업	비취업	전체평균	t	p
임금수준	2.622	2.484	2.565	2.442	.015
고용안정성	2.765	2.564	2.682	3.306	.000
직무내용	2.837	2.619	2.747	3.792	.000
직무교육, 직업훈련	2.85	2.642	2.767	3.742	.000
근무, 작업환경	2.865	2.606	2.757	4,517	.000

	취업	비취업	전체평균	t	p
보상 공정성	2.648	2.516	2.594	2.234	.026
개인 발전가능성	2.677	2.525	2.614	2.592	.010
직장동료와 의사소통	2.986	2.779	2.899	3.789	.000
직장상사와 의사소통	2.954	2.817	2.897	2.548	.011
복지후생제도	2.618	2.661	2.636	-.679	.047
전반적 직장만족도	2.780	2.615	2.710	3.832	.000

- 3) 거주기간별로 취업자의 '직장만족도'는 5년 이후 쪽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다. 직장만족도를 구성하는 10개 세부항목 중 직무내용, 직무교육·직업훈련, 직장상사와 의사소통이 5년 이전 쪽보다 낮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 4) 취업자 중 4대 보험 납부자의 경우도 5년 이후 쪽의 직장만족도가 약간 더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10개 하위항목 중 임금수준, 직무내용, 개인발전가능성, 직장상사와의 의사소통의 4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2〉 4대보험을 납부하는 취업자대상 거주기간별 직장만족도

(단위: 명, %)

	5년 이전	5년 이후	전체평균	t	p
임금수준(n=61/62)	2.820	2.6135	2.700	1.754	.082
고용안정성	2.869	2.855	2.820	0.123	.903
직무내용	3.066	2.839	2.940	2.132	.035
직무교육, 직업훈련	2.967	2.823	2.900	1.346	.181
근무, 작업환경	2.951	2.871	2.920	.704	.483
보상 공정성	2.738	2.548	2.660	1.477	.142
개인 발전가능성	2.820	2.607	2.711	1.67	.097
직장동료와 의사소통	3.049	2.902	3.060	1.373	.172
직장상사와 의사소통	3.033	2.836	2.966	1.749	.083
복지후생제도	2.721	2.574	2.651	1.043	.299
전반적 직장만족도	2.903	2.745	2.834	1.766	.080

연구문제5. 직장적응을 직장진입과 직장유지로 설정,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

- 1)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령, 직업훈련, 남한에서 학교공부, 혼인상태, 현재 정신건강, 북한이나 제3국 체류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구직시 어려운 점(개인문제영역), 양성평등의식,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역), 양성평등의식,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 북한이탈여성에게 취업할 확률이 있어서 양성평등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재미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한입국이후의 체류기간은 취업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 미혼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5-60대인 경우, 남한입국이후 공부를 한 경우, 제3국 체류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경우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기혼인 경우는 연령, 남한입국이후 학교공부여부, 북한/제3국 체류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정도, 구직시 어려움(개인문제영역), 양성평등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양성평등의식은 기혼인 경우에 취업할 확률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직장유지는 현재 취업자 중 '직장을 계속 다닐 의향여부'로 측정된 결과, 직장생활 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력, 직업훈련경험, 남한입국이후 공부여부, 양성평등의식, 월급수준, 직장만족도, 직장적응도였다. 직장유지에 직장만족도와 직장적응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표 3〉 직장생활 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취업자 전체)

	B	S.E	df	p
상수	-6.166	2.336	1	.008
연령(30대)	-.566	.680	1	.405
연령(40대)	.218	.689	1	.752
연령(5,60대)	-.244	.880	1	.782
학력(고등중)	1.440	.691	1	.037
학력(전문대)	.350	.788	1	.657
학력(대졸)	.191	1.018	1	.851
주생계책임자(본인)	-.006	.023	1	.799
직업훈련(하나원 훈련만)	-.855	.689	1	.215
직업훈련(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받음)	-1.110	.673	1	.099
남한공부여부(학교 공부했음)	-.886	.392	1	.024
북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없음)	.020	.205	1	.922
구직도움 출처 여부(없음)	.340	.498	1	.496
구직시 어려움(개인문제영역)	-.334	.382	1	.383
구직시 어려움(일자리문제영역)	-.347	.337	1	.303
양성평등의식평균	.794	.324	1	.014
입국초기의 신체적 건강상태( 좋음)	.437	.325	1	.179
현재의 신체적 건강상태( 좋음)	.082	.333	1	.805
입국초기의 정신적 건강상태( 좋음)	-.265	.364	1	.467
현재의 정신적 건강상태( 좋음)	.286	.363	1	.043
북한, 제3국에 송금할 가족여부(있음)	-.115	.312	1	.853
남한입국이후거주기간	.078	.082	1	.346
월급수준(150만원 미만)	.989	.414	1	.017
월급수준(150만원 이상)	.663	.519	1	.201
직장만족도	.751	.418	1	.072
직장적응도	.932	.397	1	.019

n=294 R<sup>2</sup>=38.7

3) 정책지지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① 고용주대상 차별금지교육 필요성, ② 남한근로자대상 북한이탈주민이해교육 필요성, ③ 공공기관에 탈북이탈여성 고용할 당제 도입 필요성, ④ 직업훈련과정에 외래어이해교육 필요성, ⑤ 직업훈련직종 선택 전 배정지역 직업정보 제공 필요성, ⑥ 배정지역 직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필요성, ⑦ 영세업체 취업시 고용지원금제도 보완 필요성, ⑧ 임신/ 출산으로 취업 늦어지는 여성에게 취업장려금 적용기간 조정 필요성, ⑨ 취업 후 1종 의료보험 혜택 보장의 9가지와 진로지도 및 취업연계에 대해 북한에서 직업경험을 연계시키는 진로지도 및 취업연계 필요 혹은 북한에서 직업경험 무관하게 희망직업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연계 여부의 10가지 이슈 모두가 평균 3.028~3.347으로 모든 정책이 지지되고 있었다.

연구문제6. 차별은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

1) 성차별 경험은 채용 5.1%, 승진 5.8%, 임금 9.4%, 업무배치 8.4%로 인구대비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채용과 승진에 비해 임금과 업무배치 차별경험이 2배 정도 많고, 주로 30대와 40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성차별이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은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해 보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채용 30.0%, 승진 32.3%, 임금 34.5%, 업무배치 29.1%로 30%정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2) 직장 성폭력 경험은 '있다'가 3.2%였는데, 3.2%에 비해 직장생활에 미친 영향은 컸다.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해 본 적 있음'이 16.7%, '일을 그만둔 적 있음'이 11.1%로 27.8%가 심각한 영향

을 받고 있었다. 대처방법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5.6%로 과반수이상이고, 40대와 5-60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만두는 반면, 20대는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30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쪽과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쪽이 절반으로 젊은 연령별로 올수록 대처방식이 적극적이라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3) 직장내 성희롱 경험은 7.0%였으며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 14.3%, 언어적 성희롱이 61.9%, 시각적 성희롱이 23.8%로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직장 성희롱에 대한 대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7.1%,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26.2%로, 성희롱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4) 양성평등의식척도의 4개 하위영역 중 직업생활 영역의 3개 문항을 가지고 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평균점수는 최소 2.15~ 최고 3.05, 평균 2.36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취업여부별, 가구소득수준별, 개인소득수준별,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이한 현상은 거주기간 5년 전후로 변화가 없다는 점과 연령적으로 20대가 낮고 50-60대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5) 직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모두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힌다' 61.4%, '굳이 먼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40.6%로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는 '밝힘'이 71.3%, 비취업자는 47.6%로 확연한 차이( $X^2=43.732, df=4, p=.000$ )를 보이고 연령별로는 20대로 올수록 밝히는 비율이 낮았다. 5년

전후로도 ‘밝힘’이 63.8%, 59.1%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 4〉 취업상태별 직장생활시 본인 소개

(단위: 명, %)

	취업자	비취업자	전체
직장상사, 동료 등 모두에게 밝힘	249(71.3)	119(47.6)	368(61.4)
굳이 비밀로 하지는 않지만 굳이 먼저 밝히지 않음	62(17.8)	65(26.0)	127(21.2)
직장내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밝힘	9(2.6)	19(7.6)	28(4.7)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김	26(7.4)	31(12.4)	57(9.5)
알려지게 될 때 연변동포라고 말함	3(0.9)	16(6.4)	19(3.2)
전체	349(100.0)	250(100.0)	599(100.0)

## VI.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한입국이후 5년이 지나면 5년 이전의 보호기간이 주는 안전망과는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므로 자립기반역량구비라는 차원에서 직장적응실태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많은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추진체계의 핵심에는 통일부가 있고 진로지도, 직업훈련, 직업연계 등 제반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있으며 여성부는 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성폭력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중 직장적응이 핵심에 있는 문제이므로 일자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나 실태조사에서 비취업의 주요원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에 있음을 보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원,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시민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기관의 협조체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치유 및 회복기능을 위한 정책방안이 요청된다. 특히 남한입국 경로가 직행방식이 아닌 제3국 경유로 바뀐 지 오래

고 제3국 체류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입국이후 적응에 신체적, 심리적 치유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여성부와 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담 및 심리치유문제에 보다 더 주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를 방안으로 첫째, 취업장려금 활용기간을 입국 이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채용업체에 인원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사 멘토제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5년 보호기간 동안 복지제도를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제3국 체류 등 입국과정에 생긴 신체적, 정신적 건강치유에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역량, 의사소통 위한 “스피치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집중지역에 “육아품앗이 협동조합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한다. 일곱째, 남한의 직장인, 남한시민대상의 시민이해교양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여덟째, 특별임용을 공공기관 일정 비율 북한이탈여성 취업할당제로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일규·고혜원. 200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미석·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17.
- 박정란. 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
- 박정란. 2012. “북한이탈주민 건강가정 지원: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연구』 1.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201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통일부. 2013. 『2013 통일백서』.

# 장애인 직업훈련 경험 및 그 효과성의 성별 격차에 관한 연구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에 덧붙여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확립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시혜와 구제가 아니라, 장애를 입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애적(disabling)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 속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장애인 그룹 안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차별은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위치와 순환적인 인과 관계에 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은 그들을 노동시장 내 최하 취약 집단의 위치로 내몰고 반대로 노동시장 내 열악한 지위는 그들을 더욱더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로 만들어 그들의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이러한 열악한 위치는 일정부분 그들의 짧은 정규교육 연한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험의 부재로 인한 인적자본 미형성에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완전하게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

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시킨다.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J. Høgelund, J. G. Pedersen 2002).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여부 및 수강 희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다르게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나. 선행연구 리뷰

우선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패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는 이성규(2004), 유완식·황아윤(2007), 국회예산정책처(2008), 양숙미 외(2011), 김경선·김영식(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과연 다른지, 직업훈련

이 취업확률을 높여준다면 남성과 여성 장애인 모두에 대해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인지, 남성 장애인의 취업확률을 더 크게 높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성별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더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 성별과 관련된 직업훈련 효과성의 차별적 작용을 분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는 직업훈련 성과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직업훈련이 취업여부나 임금 등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변수의 하나로 간주할 뿐이었다.

한편 류정진의 연구(2010)는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에 있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에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과 다른 요인들의 영향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나 조절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통제된 계량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여성 장애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구직활동, 취업성공, 취업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직업훈련 경험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고자 한 연구들(백은령 외, 2007; 이재서·백은령, 2008; 박자경, 2008; 한애경, 2011; 김세연 외, 2012)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 내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을 당연시하면서 그 열악함을 설명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만이 직면하고 있는 특유한 영향요인을 구명하려고 하지만, 남성이라는 비교집단의 부재로 인해 정작 여성 장애인만의 특유한 영향요인 규명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모형의 구성(model specification)이나 독립변수의 선정에서 기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차별성이 없다. 또한 사용한 자료나 분석방법에 따라 추정된 직업훈련 변수의 효과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도 분석 방법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추정 계수의 정확성이나 유의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성 장애인의 취업이나 경제활동 참여가 특별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천착하려 한 연구들, 혹은 남녀 장애인을 모두 분석하면서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혜영(2010)과 황아윤(2007)은 전자에 속하는 연구들로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에게 비해 저조한 이유는 구직열망 자체가 약하고 따라서 직업훈련을 비롯한 구직활동 참여가 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성 장애인이 일자리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한다. 그러나 황아윤(2007)은 샘플 자체가 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선택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횡단면 분석으로서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등의 추정상 문제를 안고 있다. 정혜영(2010)은 통제된 통계적 추정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 제안의 경험적 근거가 취약하다. 한편 곽지영(2010)은 남성 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달리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는 (장애를 제외한)만성질환 유무, 생활 만족도,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직업훈련 경험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장애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성에 특화된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샘플을 갈라 별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1차년도 패널 자료만으로 횡단면 분석을 한 데 그쳐 선택편의 문제나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통제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연구 리뷰 결과, 우리는 장애인 직업훈련 효과성을 다룬 그동안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공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남녀 장애인을 모두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성별 변수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남성과 비교하여 제시한 연구가 드물며, 드물게 그러한 분석을 시도한 경우에도 적절한 자료와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선택편의, 내생성 등 추정상의 통계적 쟁점들을 해결한 연구는 더욱 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이라는 비교집단의 부재로 인해 여성만의 특수한 노동시장 진입 방해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돼 있고, 앞서 언급한 추정상의 쟁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직업훈련의 효과성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직업훈련 효과성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분석, 즉 성별 변수의 효과 뿐 아니라 성별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여타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계량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추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선택편

의, 내생성 등의 문제를 적절한 자료와 분석방법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분석모형의 추정

### 1) 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1차웨이브에서 4차웨이브자료까지를 병합하여 각 조사차수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로 구축한 다음, 정규교육을 종료한 성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1차웨이브 기준 만 19세 이상인 응답자 중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이 아닌자(즉, 졸업, 종퇴, 수료자)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골라낸 유효표본 수는 매 웨이브마다 4,560명이다.

세가지 모형을 추정하고자 하는데, 우선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어떤 특성이 직업훈련 수강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모형은 실제 직업훈련 경험 유무가 아니라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이다. 어떤 요인들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정 모형이다. 마지막은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이다. 직업훈련 수강 경험을 포함한 여러 관심 변수들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세 모형 모두에 대해 성별 변수의 영향과 성별 변수와 타 관심 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여부(및 참여 희망 여부)와 취업여부에 성별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성별 변수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거나 증폭 혹은 축소되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로써 비롯되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고, 두 추정모형 중에서 어떤 추정이 일치추정량을 담보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지만, 종속변수의 관측치 중에서 4개년도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는 관측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고정효과모형이 수렴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만을 추정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와 시불변 오차항과의 상관관계가 0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확률효과 추정량이 효율추정량이자 일치추정량이 될 수 있다.

### 2)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

다음 <표 1>에는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가 요약돼 있다. 우선 첫 번째 모형의 종속변수인 직업훈련 경험 여부는 해당 차수 혹은 이전 차수에 한번이라도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면 1, 한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전체 4년치 관측치 중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관측치는 8.2%에 불과하며, 패널개체의 연도간 분산보다 단일 연도의 패널개체간 분산이 더 크다. 두 번째와 세번째 모형의 종속변수인 직업훈련 희망여부와 취업여부는 조사 차수 시점에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1, 취업을 한 상태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서 전체 관측치의 7.1%가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고 41.5%가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 역시 패널개체의 연도간 분산보다 단

일 연도의 패널개체간 분산이 더 크다.

독립변수로서 성별변수는 남성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서 전체 관측치 기준 평균 55.9%가 남성이다. 지역변수는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 광역시와 지방도로 구분되는 더미변수로서, 지방광역시 거주는 전체의 17.8%, 지방도 거주는 전체의 43.7%에 달했다(나머지 38.5%는 수도권). 4개년간 지역간 이동이 거의 없었으므로 시불변 변수로 처리했다. 장애유형 변수는 15개 장애유형을 신체외부기능장애, 신체내부기능장애,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등

네가지 범주로 재구분하고 신체외부기능장애를 기준 범주로 하는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전체 관측치의 23.4%가 감각기관장애로 구분된다. 장애유형 변수 역시 4년간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시불변 변수로 간주한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4년 전체 관측치의 41.1%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시불변 변수로 처리됐다. 소득변수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 총소득 대수값을 사용했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남성)	overall	0.5596	0.4964	0	1	N=18,240
	between		0.4965	0	1	n=4,560
	within		0	0.5596	0.5596	T=4
(지방광역시)	overall	0.1777	0.3823	0	1	N=18,240
	between		0.3723	0	1	n=4,560
	within		0.087	-0.5723	0.9277	T=4
(지방도)	overall	0.4372	0.4961	0	1	N=18,240
	between		0.472	0	1	n=4,560
	within		0.1528	-0.3128	1.1872	T=4
연령	overall	51.3948	10.5117	19	79	N=16,763
	between		10.5212	19.75	77.25	n=4,560
	within		1.0811	45.8948	59.7281	T=bar=3.676
(감각기관 장애)	overall	0.2342	0.4235	0	1	N=18,240
	between		0.4236	0	1	n=4,560
	within		0	0.2342	0.2342	T=4
(정신적장애)	overall	0.0697	0.2547	0	1	N=18,240
	between		0.2547	0	1	n=4,560
	within		0	0.0697	0.0697	T=4
(신체내부기능장애)	overall	0.0763	0.2655	0	1	N=18,240
	between		0.2655	0	1	n=4,560
	within		0	0.0763	0.0763	T=4
(중학교)	overall	0.2132	0.4096	0	1	N=18,240
	between		0.4096	0	1	n=4,560
	within		0	0.2132	0.2132	T=4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고등학교)	overall	0.3298	0.4702	0	1	N=18,240
	between		0.4702	0	1	n=4,560
	within		0	0.3298	0.3298	T=4
(전문대졸이상)	overall	0.0879	0.2832	0	1	N=18,240
	between		0.2832	0	1	n=4,560
	within		0	0.0879	0.0879	T=4
(중증)	overall	0.4116	0.4921	0	1	N=18,240
	between		0.4922	0	1	n=4560
	within		0	0.4116	0.4116	T=4
(취업)	overall	0.4152	0.4928	0	1	N=16,763
	between		0.4541	0	1	n=4560
	within		0.1947	-0.3348	1.1652	T-bar=3.676
(기혼유배우)	overall	0.6105	0.4877	0	1	N=16,763
	between		0.4817	0	1	n=4560
	within		0.0791	-0.134	1.3605	T-bar=3.676
(기혼무배우)	overall	0.2283	0.4198	0	1	N=16,763
	between		0.4132	0	1	n= 4560
	within		0.0739	-0.5217	0.9783	T-bar=3.676
(직업훈련경험)	overall	0.0821	0.2745	0	1	N=16,506
	between		0.2692	0	1	n=4,560
	within		0.0516	-0.6679	0.8321	T=3.620
(직업훈련희망)	overall	0.0719	0.2583	0	1	N=16,763
	between		0.1824	0	1	n= 4560
	within		0.1924	-0.6781	0.8219	T-bar=3.676
(건강상태좋은편)	overall	0.3688	0.4825	0	1	N=16,763
	between		0.4073	0	1	n=4,560
	within		0.2638	-0.3812	1.1188	T-bar=3.676
(타인도움 필요)	overall	0.4076	0.4914	0	1	N=16,763
	between		0.4358	0	1	n=4560
	within		0.2334	-0.3424	1.1576	T-bar=3.676
(이동편리)	overall	0.4305	0.4952	0	1	N=16,763
	between		0.4066	0	1	n=4560
	within		0.2902	-0.3195	1.1805	T-bar=3.676
(가구총소득)	overall	16.1988	2.0868	0	19.9784	N=16,615
	between		1.6437	0	18.6877	n=4,559
	within		1.3723	2.9013	28.4248	T-bar=3.644
(가구주)	overall	0.6578	0.4745	0	1	N=16,763
	between		0.4337	0	1	n=4560
	within		0.1962	-0.0922	1.4078	T-bar=3.676

3) 추정 결과

직업훈련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가) 직업훈련 경험 유무

<표 2> 직업훈련 경험 유무에 대한 패널로짓모형 추정(확률효과)

indi. 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남성)	0.1833	0.2420	0.76	0.449	-0.2909	0.6576
(지방광역시)	-0.5028	0.3061	-1.64	0.101	-1.1028	0.0972
(지방도)	0.2419	0.2381	1.02	0.310	-0.2248	0.7086
연령	-0.0006	0.0747	-0.01	0.995	-0.1468	0.1459
연령제곱	-0.0004	0.0008	-0.53	0.598	-0.0019	0.0011
(감각기관 장애)	-0.2786	0.2641	-1.05	0.291	-0.7962	0.2390
(정신적장애)	-1.239	0.5047	-2.45	0.014	-2.2278	-0.2496
(신체내부기능장애)	-0.4261	0.5524	-0.77	0.440	-1.5089	0.6566
(중학교)	0.8308	0.3326	2.50	0.012	0.1790	1.4826
(고등학교)	1.9979	0.2971	6.73	0.000	1.4157	2.5802
(전문대졸이상)	3.4415	0.3862	8.91	0.000	2.6846	4.1983
(중증)	-0.164	0.253	-0.65	0.517	-0.6598	0.3319
(기혼유배우)	-0.7064	0.3361	-2.10	0.036	-1.3651	-0.0477
(기혼무배우)	0.0741	0.3907	0.19	0.850	-0.6916	0.8398
(건강상태좋은편)	0.4615	0.1936	2.38	0.017	0.0821	0.8410
(타인도움 필요)	-0.4422	0.2254	-1.96	0.050	-0.8841	-0.0004
(이동편리)	-0.1175	0.1966	-0.60	0.550	-0.5029	0.2679
(가구총소득)	0.1153	0.0565	2.04	0.041	0.0045	0.2260
(가구주)	-0.2769	0.2317	-1.19	0.232	-0.7311	0.1773
상수	-11.9292	1.9881	-6.00	0.000	-15.8258	-8.0326
sigma_u	7.5598	0.1599			7.2527	7.8798
rho	0.9456	0.0022			0.9411	0.9497

Likelihood-ratio test of rho=0: chibar2(01)=5219.42

Prob >= chibar2 = 0.000

먼저 다른 모든 관측된 요인들의 영향 및 패널개체의 비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은 직업훈련 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는 여타 유형의 장애를 가

진 자에 비해 직업훈련을 경험할 확률이 더 낮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업훈련 경험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직업훈련 수강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이나 배우자 없는 기혼자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자가 직업훈련 경험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이 좋

은 편이라고 평가한 장애인이 나쁘다고 평가한 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다. 또한 가구소득은 직업훈련 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직업훈련 참여 여부 결정 모형에서는 성별의 주효과와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성별과 여타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나)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표 3〉 직업훈련 희망여부에 대한 패널로지모형 추정(확률효과)

indi. 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남성)	-.2584643	.1096865	-2.36	0.018	-.4734459	-.0434827
(지방광역시)	-.0953025	.1358926	-0.70	0.483	-.361647	.1710421
(지방도)	.2361104	.1077354	2.19	0.028	.0249528	.447268
연령	-.0239638	.0338694	-0.71	0.479	-.0903466	.042419
연령제곱	-.0005102	.0003547	-1.44	0.150	-.0012053	.000185
(감각기관 장애)	-.2529746	.1212373	-2.09	0.037	-.4905954	-.0153538
(정신적장애)	-.8697662	.2206325	-3.94	0.000	-1.302198	-.4373343
(신체내부기능장애)	-.2541765	.2016168	-1.26	0.207	-.6493381	.1409852
(중학교)	.4853849	.1424387	3.41	0.001	.2062102	.7645597
(고등학교)	.6151686	.1313738	4.68	0.000	.3576807	.8726566
(전문대졸이상)	.7093802	.1814311	3.91	0.000	.3537818	1.064979
(중증)	-.0521076	.113419	-0.46	0.646	-.2744048	.1701896
(기혼유배우)	-.1953777	.1495013	-1.31	0.191	-.4883949	.0976395
(기혼무배우)	-.1107918	.1805614	-0.61	0.539	-.4646857	.2431022
(건강상태좋은편)	.4958089	.0924332	5.36	0.000	.3146433	.6769746
(타인도움 필요)	-.3380018	.1035123	-3.27	0.001	-.5408822	-.1351214
(이동편리)	-.269286	.0933096	-2.89	0.004	-.4521695	-.0864025
(가구총소득)	-.0487611	.0175859	-2.77	0.006	-.0832289	-.0142933
(가구주)	.0038857	.1098028	0.04	0.972	-.2113238	.2190953
상수	-.3432209	.8322886	-0.41	0.680	-1.974477	1.288035
sigma_u	1.670161	.077477			1.525008	1.829131
rho	.4588415	.0230373			.4141468	.5042084

Likelihood-ratio test of rho=0: chibar2(01) = 423.38

Prob >= chibar2 = 0.000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각기관 장애나 정신적 장애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유형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불편함이 있는 사람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향후 직업

훈련 참여를 희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가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방도 거주자가 수도권이나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직업훈련을 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성별과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직업훈련 희망여부에 대한 패널로짓모형 추정(성별과 고졸의 상호작용)

indi. 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남성)	-.080873	.1362847	-0.59	0.553	-.3479861	.1862401
(지방광역시)	-.0993949	.1357822	-0.73	0.464	-.3655232	.1667334
(지방도)	.2305392	.1076368	2.14	0.032	.019575	.4415033
연령	-.0247883	.0338205	-0.73	0.464	-.0910752	.0414986
연령제곱	-.0004958	.0003541	-1.40	0.162	-.0011899	.0001983
(감각기관 장애)	-.2624583	.121202	-2.17	0.030	-.5000098	-.0249068
(정신적장애)	-.8861109	.2205954	-4.02	0.000	-1.31847	-.4537519
(신체내부기능장애)	-.2523457	.2012813	-1.25	0.210	-.6468498	.1421585
(중학교)	.4761867	.1422551	3.35	0.001	.1973718	.7550016
(고등학교)	.8677334	.1744014	4.98	0.000	.5259129	1.209554
(전문대졸이상)	.6893924	.1812015	3.80	0.000	.3342439	1.044541
(중증)	-.0488542	.1132373	-0.43	0.666	-.2707951	.1730868
(기혼유배우)	-.2045469	.1491908	-1.37	0.170	-.4969556	.0878618
(기혼무배우)	-.1065564	.1800742	-0.59	0.554	-.4594952	.2463825
(건강상태좋은편)	.4937302	.0923525	5.35	0.000	.3127226	.6747379
(타인도움 필요)	-.3385347	.1034212	-3.27	0.001	-.5412366	-.1358328
(이동편리)	-.2702702	.0932362	-2.90	0.004	-.4530098	-.0875306
(가구총소득)	-.0490673	.0175644	-2.79	0.005	-.0834928	-.0146418
(가구주)	.0035051	.1097361	0.03	0.975	-.2115737	.218584
남성·고졸	-.4381659	.1994513	-2.20	0.028	-.8290834	-.0472485
상수	-.4135251	.83193	-0.50	0.619	-2.044078	1.217028

남성장애인 사이에서는 고졸 학력이 직업훈련 희망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0.430(고졸변수의 주효과 계수 0.8677과 성별과 상호작용항의 계수-0.4382의 합)이지만 여성장애인 사이에서는 0.8677로서 더 높다. 즉 남성 장애인 보다는 여성 장애인 사이에서 고졸자

가 직업훈련을 원할 확률이 더 높다. 여타 학력변수들(중졸, 전문대졸이상)에서는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직업훈련 희망여부에 대한 패널로짓모형 추정(성별과 장애정도의 상호작용)

indi. 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남성)	-.5388207	.1378412	-3.91	0.000	-.8089845	-.2686569
(지방광역시)	-.088321	.1358408	-0.65	0.516	-.3545641	.1779221
(지방도)	.2365663	.1076919	2.20	0.028	.0254942	.4476385
연령	-.0232511	.0338354	-0.69	0.492	-.0895674	.0430651
연령제곱	-.000522	.0003545	-1.47	0.141	-.0012167	.0001728
(감각기관 장애)	-.2572526	.1212272	-2.12	0.034	-.4948535	-.0196516
(정신적장애)	-.8348484	.221062	-3.78	0.000	-1.268122	-.4015748
(신체내부기능장애)	-.2305626	.201646	-1.14	0.253	-.6257814	.1646563
(중학교)	.4822063	.1424457	3.39	0.001	.2030178	.7613948
(고등학교)	.6117257	.1313727	4.66	0.000	.35424	.8692115
(전문대졸이상)	.7218563	.1813135	3.98	0.000	.3664884	1.077224
(중증)	-.4527114	.1661927	-2.72	0.006	-.778443	-.1269797
(기혼유배우)	-.1851511	.1494967	-1.24	0.216	-.4781593	.1078571
(기혼무배우)	-.1221456	.1807237	-0.68	0.499	-.4763575	.2320663
(건강상태좋은편)	.4978286	.0923818	5.39	0.000	.3167636	.6788935
(타인도움 필요)	-.3316572	.1033295	-3.21	0.001	-.5341793	-.1291351
(이동편리)	-.2675971	.0932323	-2.87	0.004	-.450329	-.0848652
(가구총소득)	-.0474956	.0176493	-2.69	0.007	-.0820876	-.0129035
(가구주)	.0331224	.1100953	0.30	0.764	-.1826603	.2489052
성별*중증	.6713061	.2011028	3.34	0.001	.2771519	1.06546
상수	-.2354425	.8319401	-0.28	0.777	-1.866015	1.39513

한편 성별과 장애정도 역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표 5〉). 남성 중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효과가 0.219(0.6713-0.4527)로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을 희망할 확률이 더 높으나 여성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의 효과는 -0.4527로서 여성 장애인의 경우 중증이면 직업훈련을 희망할 확률이 더 낮다.

**(다)장애인 취업여부**

먼저 모든 관측된 변수들의 영향과 비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직업훈련 경험은 취업 확

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도 거주자가 지방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이차함수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일정 연령까지는 취업확률이 증가하다가 그 연령대가 넘어서면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각기관 장애는 여타 유형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고, 신체내부기관 장애는 다른 유형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 층의 취업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증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사는 기혼자가 미혼자나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은 기혼자에 비해 각각 취업확률이 높았다.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동에 별다른 불편함을 못느끼는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장애인에 비해 각각 취업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증가하며 가구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표 6〉).

〈표 6〉 취업여부에 대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확률효과)

ind.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직업훈련경험 유)	.5517856	.2663537	2.07	0.038	.029742	1.073829
(남성)	1.952597	.1899343	10.28	0.000	1.580333	2.324861
(지방광역시)	-.2681996	.2293229	-1.17	0.242	-.7176642	.181265
(지방도)	1.706499	.1859193	9.18	0.000	1.342104	2.070894
연령	.2281464	.057035	4.00	0.000	.1163599	.3399329
연령제곱	-.0035765	.0005632	-6.35	0.000	-.0046803	-.0024727
(감각기관 장애)	1.1222	.2016096	5.57	0.000	.7270523	1.517347
(정신적장애)	-.4388365	.3785232	-1.16	0.246	-1.180728	.3030553
(신체내부기능장애)	-1.663106	.3468179	-4.80	0.000	-2.342856	-.9833551
(중학교)	-.4443995	.2294663	-1.94	0.053	-.8941452	.0053462
(고등학교)	-.1829385	.2145481	-0.85	0.394	-.6034451	.237568
(전문대졸이상)	1.052004	.3378369	3.11	0.002	.3898553	1.714152
(중증)	-3.467848	.1998554	-17.35	0.000	-3.859557	-3.076138
(기혼유배우)	2.521102	.2783342	9.06	0.000	1.975577	3.066627
(기혼무배우)	.3353463	.3168133	1.06	0.290	-.2855963	.9562889
(건강상태좋은편)	1.077392	.1117361	9.64	0.000	.8583936	1.296391
(타인도움 필요)	-1.265077	.1249447	-10.13	0.000	-1.509964	-1.02019
(이동편리)	.7286935	.1044706	6.98	0.000	.5239348	.9334522
(가구총소득)	.4200308	.0398475	10.54	0.000	.3419312	.4981305
(가구주)	1.565042	.1465007	10.68	0.000	1.277906	1.852178
상수	-13.52322	1.551803	-8.71	0.000	-16.5647	-1.48174
sigma_u	4.915756	.1403185			4.648289	5.198614
rho	.8801703	.0060212			.867858	.8914789

Likelihood-ratio test of rho=0: chibar2(01) =5223.76

Prob >= chibar2 = 0.000

성별과 직업훈련 수강 여부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7〉). 따라서 남성 장애인 중에서 직업훈련효과는 주효과 1.1329와 상호작용효과 -0.1050을 합한 1.0279인 반면 여성 장애인 중에서 직업훈련

효과는 주효과 1.1329로서, 직업훈련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 사이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주효과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후에도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표 7〉 취업여부에 대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성별과 직업훈련의 상호작용)

ind.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직업훈련경험 유)	1.142861	.4143391	2.76	0.006	.3307709	1.95495
(남성)	2.047974	.1962581	1.44	0.000	1.663315	2.432633
(지방광역시)	-.2720767	.2295242	-1.19	0.236	-.7219358	.1777823
(지방도)	1.706324	.1860679	9.17	0.000	1.341638	2.07101
연령	.230594	.0571135	4.04	0.000	.1186536	.3425343
연령제곱	-.003607	.0005642	-6.39	0.000	-.0047129	-.0025011
(감각기관 장애)	1.129052	.2016994	5.60	0.000	.7337288	1.524376
(정신적장애)	-.4385192	.3790984	-1.16	0.247	-1.181538	.3044999
(신체내부기능장애)	-1.661134	.3475729	-4.78	0.000	-2.342365	-.9799042
(중학교)	-.4466136	.229721	-1.94	0.052	-.8968585	.0036313
(고등학교)	-.1891805	.2147653	-0.88	0.378	-.6101128	.2317518
(전문대졸이상)	1.05611	.3381151	3.12	0.002	.3934166	1.718804
(중졸)	-3.472648	.2001628	-17.35	0.000	-3.86496	-3.080336
(기혼유배우)	2.526895	.2783216	9.08	0.000	1.981395	3.072396
(기혼무배우)	.343596	.3169359	1.08	0.278	-.2775871	.964779
(건강상태좋은편)	1.075874	.1118006	9.62	0.000	.856749	1.294999
(타인도움 필요)	-1.266311	.1250255	-1.13	0.000	-1.511356	-1.021265
(이동편리)	.7280081	.1045084	6.97	0.000	.5231753	.9328409
(가구총소득)	.4215681	.0399085	1.56	0.000	.3433487	.4997874
(가구주)	1.561441	.1465275	1.66	0.000	1.274252	1.84863
남성*직훈	-1.049982	.5338205	-1.97	0.049	-2.096251	-.0037133
상수	-13.64193	1.554866	-8.77	0.000	-16.68941	-10.59445

라. 합의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들의 직업훈련

참여 여부, 직업훈련 참여 희망 여부, 취업여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① 남성보다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 희망 확률이 더 높다는

것, ② 그러나 중증 장애인 중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직훈 희망 확률이 남성보다 더 낮다는 것, ③ 그러나 직업훈련 참여 확률은 남성 장애인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지만 약간 더 높다는 것, ④ 취업 확률 결정모형 추정에서는 모든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 장애인의 취업확률이 더 높다는 것, ⑤ 직업훈련 효과 역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져 모든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직업훈련 수강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더 높다는 것, ⑥ 직훈효과와 성별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어 남성 그룹 보다는 여성 장애인 그룹에서 직훈 효과가 더

컸다는 것 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 장애인은 직업훈련 희망 확률이 더 높지만 실제 직업훈련을 받을 확률은 남성보다 더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직업훈련을 받으면 남성장애인보다는 여성장애인의 취업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장애인 사이의 성평등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평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수준 진단과 정책적 수요<sup>1)</sup>

-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아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들어가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정부는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결혼이민자들이 이주 직후 경험하게 되는 언어소통 문제와 자녀양육, 부부갈등 등을 완화하여 원활하게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데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에 비해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이들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35.7% → 21.6%)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여 기존의 정책대상의 특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문화적 통합의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이주 초기단계의 위기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향후 이들의 적응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결정적 계기는 초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통합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자가 헤쳐가야 할 결정적 계기는 다양한 시점에 산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사회통합의 제반 측면에서 일종의 자원으로서 심리적 건강과 일상생활, 취업 등을 위한 정서적, 실질적지지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이 글은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진전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결과 중 사회·경제적 통합 측면을 발췌·요약하였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통합 수준 가장 낮아

2012 전국다문화가족지원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결과<sup>2)</sup>, 한국인과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25.9%로, 4명 중 3명은 여전히 한국인과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사회참여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취업자의 비율과 200만원 이상 임금소득자 비율 등 경제적 통합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의 성별격차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민자 개인의 인적 자본 수준이나 종족적 배경 차이 이외에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와, 여성에게 부여된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이민자의 성별, 이주유형별 사회, 경제적통합

		사회참여 경험		경제활동 경험		취업자의 임금수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74.1 (200,643)	25.9 (69,954)	41.5 (112,299)	58.5 (158,298)	37.9 (59,962)	48.8 (77,125)	13.4 (21,212)
남성	일반귀화	83.4 (16,076)	16.6 (3,203)	20.1 (3,876)	79.9 (15,403)	10.4 (1,606)	66.8 (10,286)	22.8 (3,512)
	결혼이민	70.9 (21,965)	29.1 (9,022)	16.4 (5,069)	83.6 (25,918)	10.6 (-2,764)	42.8 (17,544)	46.4 (12,038)
여성	일반귀화	75.9 (22,957)	24.1 (7,273)	30.6 (11,250)	69.4 (18,980)	33.5 (-6,370)	60.9 (11,555)	5.6 (1,055)
	결혼이민	73.5 (139,645)	26.5 (50,456)	44 (92,104)	56 (97,997)	50.2 (-49,222)	45.1 (44,168)	4.7 (4,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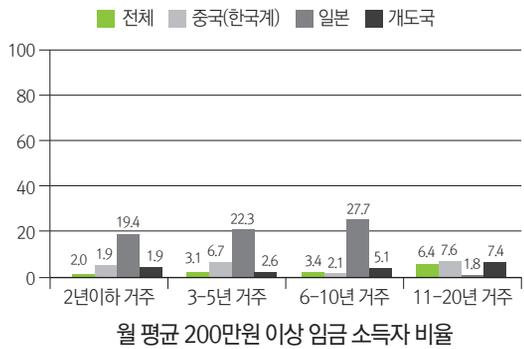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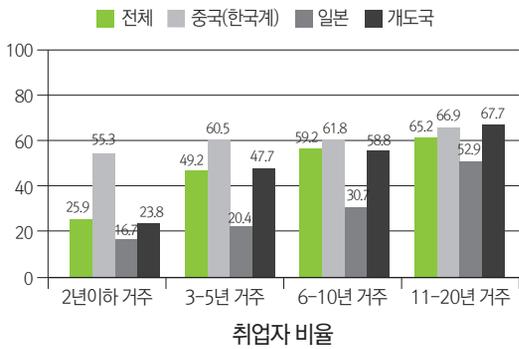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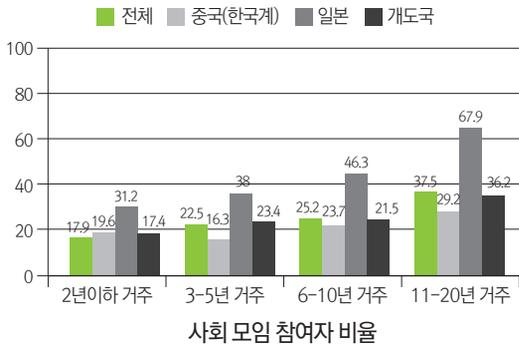
### 출신국가에 따라 사회·경제적통합의 진전양상 달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이 길어질수록 사회참여도 증가하고, 경제적 활동도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인종, 다국적 출신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민자집단이 모두 동일한 진전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정책의 주요 타깃인 아시아 출신들만 분리하여 보더라도(179,573명), 한국계 중국 출신, 일본 출신, 아시아 개도국 출신자들<sup>3)</sup>의 사

회·경제적통합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는 취업자 비율에 있어서, 일본 출신은 사회 모임 참여자 비율, 200만원 이상 임금소득자 비율에서 다른 출신국가군보다 사회통합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 거주기간을 거쳐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시아 개도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초기 가장 낮은 사회경제통합 수준을 보이지만, 거주기간이 지날수록 그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성을 보였다.

2) 국내 거주기간이 20년 이하인 이민자 총 270,597명(가중치 부여) 분석

3) 비한국계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그림 1]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경제적통합수준 : 출신국가별 비교

### 아시아개도국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

인터뷰 결과,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말이 통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주 경험과 적응 상황을 공감하면서,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서적, 실질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잠시나마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급히 일자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요카〉 (처음 한국에 와서 살던 지역) 그쪽에 저보다 먼저 온 몽골 사람이 있었어요... 아플 때는 그 사람한테도 가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지역에는) 일자리 없어요...(중략) 그 언니 연결해 가지고 “\*\*에 일자리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니는 가치는 일정 단계가 되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어머니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자녀를 교육시킬 시점이 되면 서로의 정보와 경험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를 고민할 뿐 도움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어드커〉 (종교단체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 같이 연락하고 힘든 거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중략)...그리고 어려운 거 이야기를 하면 방법을 모르니까 서로 똑같은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겨낸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한 이들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근무 여건이나 임금 수준 등이 좋지 않은 몇몇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공통적으로 점차 한국인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어울리는 한국인들은 주로 동네 아주머니, 아이 엄마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신도, 센터 선생님 등으로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국인 관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의 대화 기회가 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어 역량도 발전시키고 한국어 대화에 대한 자신감도 형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스스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기대만큼 발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부양 부담 증가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은 한국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있어, 이주 직후부터 심각한 빈곤에 시달린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남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남편의 노동시장 내 위치가 점차 취약해지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크리스트나〉 옛날은 괜찮은데 지금은 물가 너무 비싼데 옛날에는 남편 일했어. 나는 조금만.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 어떡해. 지금 혼자 일해. 작년에는 계속 일해서 괜찮았는데 지금...(혼자 일하니깐 힘들어요.)갑자기. 애들 많이 컸어.

남편의 경제력 상실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혼자’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들은 취업이 긴급하더라도 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수준도 높지 않고, 한국어 수준도 완벽하지 않을뿐더러 자녀양육 책임도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찾더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정기적으로 부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남편의 장사를 돕는 등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몇몇 일자리로 제한되어 있었다.

〈트영〉 막막하고 생각 없어요. 그때 제가 일 나갔는데 알바잖아요. 60만원 받았나? 밤새 2시까지 일을 하고도... 6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진짜 당장 내일 밀가로 먹을 정도록요. 라며... 아오... 60만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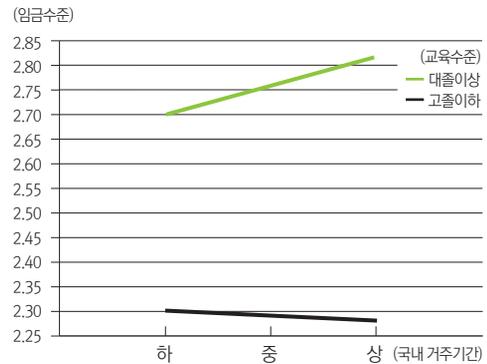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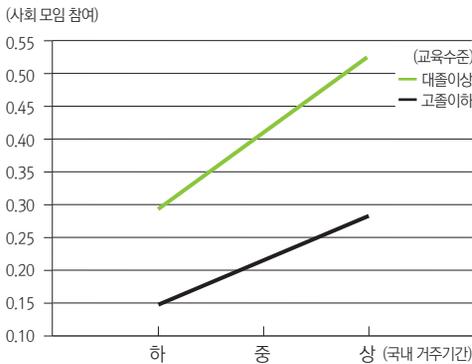
렇게 받고 월세 사는 거 10만원 내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생활하고요....(중략)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진전에 도움을 주는 요인

### 1) 교육수준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대졸 이상의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모임 참여와 취업자의 임금수준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변화 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 작용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는데, 특히 국내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 외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회통합을 구현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보다 다양한 한국인들과의 관계 발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었으며, 학력의 상승에 따라 보다 좋은 일자리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 이때, 인적자원은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자원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었다.



[그림 2] 사회·경제적 통합수준에 대한 교육수준과 국내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 2)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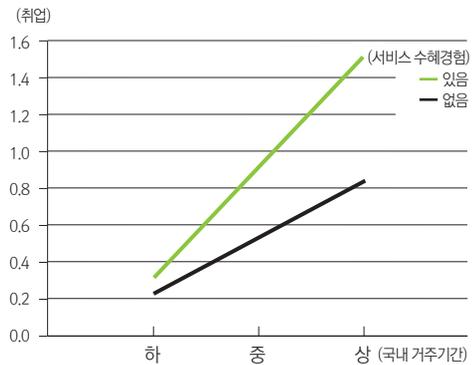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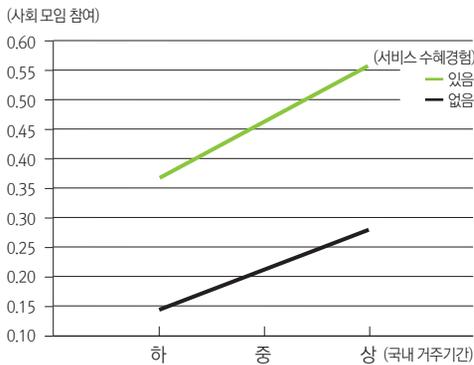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직면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데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획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학업이나 직장, 종교 활동이나 학부모 모임 등 다양한 맥락에서 만나는 한국인과의 관계와 서비스기관 및 단체의 활동가들의 지지는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복잡한 생애주기별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 3) 서비스 수혜경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서비스 수혜 경험을 들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 과정에서 결정적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때 서비스 기관과의 관

계에 있어 단순한 이용자로서만 관계를 맺는 이들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 간에는 서비스 기관이 사회통합 상에 지니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단순한 서비스 이용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만이 서비스 기관을 통해 중요한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활동 경험을 쌓는 동시에 결정적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족 외부의 지지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림 3] 사회·경제적 통합수준에 대한 서비스 수혜경험과 국내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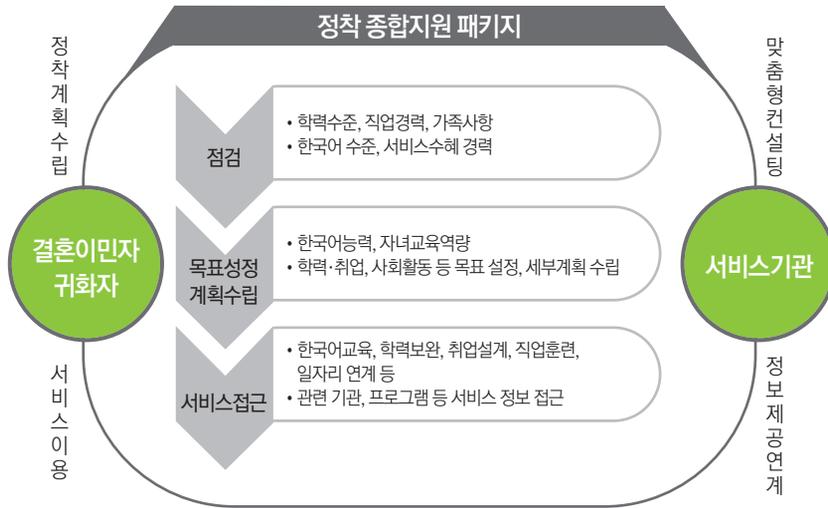
## 향후 정책의 방향

### 1) 결혼이민자의 정착 진전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주로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언어적·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면, 향후 정책의 방향은 초기 적응단계 이후에 대한 본격적 개입에 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는 결혼이민자 개개인이 자신의 정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예측하며 개인적, 가족적 상황을 고려해 정착목표와 진로를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한층 복잡해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가칭)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컨설팅 기능을 본격화해야 하고,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기능과 서비스 연계 기능이 기관의 핵심 기능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다문화가  
족 정책은 개별 기관이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서 벗어나 종합 지원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의 기능

## 2) 사회통합 진전의 핵심 영향 요인에 대한 조치 강화

사회통합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의 파악 및 직접적 대처와 더불어 사회통합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대처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변화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우선 결혼이민자 스스로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개인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적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 개인이나 가족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대만 정부가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독학을 통한 학업 평가시험(Appraisal Test of Academic Attainment through Self-Study)’ 프로그램이 있다(김승권 외, 2010).

또한 앞서 제시한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가칭)’를 활용해 결혼이민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 역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서비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서비스는 이민자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가족원들이 가족 내외의 지지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다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